Korea Trade Review (Korea Trade Rev. ; 무역학회지)
Vol. 45, No. 1, February 2020 (pp. 31-45)
https://data.doi.or.kr/10.22659/KTRA.2020.45.1.31

貿易學會誌
ISSN 1226-2765 (Print)

국제상사조정제도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개정 동향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 법학박사

김성룡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The Revision Trend of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Hyun-Suk Oh[a], Sung-Ryong Kim[b]
[a]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outh Korea
[b]School of Economics & Trad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1 February 2020, Revised 21 February 2020, Accepted 26 February 2020

Abstract

As FTAs are introduced, greater trade between the countries results in more disputes between parties to the agreement.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have previously been settled mainly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with the recent rise in negative aspects of the arbitration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seek ways to utilize mediation for replacing the arbitration system. Mediation is a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helps the parties settle their disputes on their own through negotiations.

The UNCITRAL, which seeks to unify and develop international trade law, amended the Model Mediation Law in 2018 and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in August 2019 to enable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ontents of the 2018 Model Mediation Law and predicts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for future international trade.

Keywords: Dispute settlement,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UNCITRAL Model mediation law, Singapore Convention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본 논문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연구임.

[a] First Author, E-mail: ohs1905@kcab.or.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ckie3@knu.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Ⅰ. 서론

오늘날 국가들은 경제 교류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특히 양자 간 무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체결하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은 물론 민간교류 역시 늘어났으며 계약 유형도 단순한 상품무역부터 여러 당사자가 포함된 복잡한 구조의 계약까지 다양해졌다. 또한 무역 분쟁 역시 증가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국제무역에서 주로 활용되는 분쟁해결방법 중 하나가 제3자인 사인의 중재인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제도이다(김성룡, 2018). 대부분의 국가를 달리하는 국제계약에서는 분쟁의 해결과 관련해서 준거법(Governing Law)과 분쟁관할(Jurisdiction)을 포함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은 분쟁해결을 위해 특정 국가 법원에서의 소송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분쟁당사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 국적을 갖고 있다면, 자신들의 분쟁을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가 불확실한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은 중립성을 보장하고 국제조약(뉴욕협약)에 따라 국제적인 집행력을 보장하고 있는 국제중재가 일찍부터 선호되어 왔다. 국제중재는 계약에 따른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합의(중재합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하여 판정을 내리는 중재판정부 구성 등 중재절차 전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로 평가되어 왔다(유병욱, 2007). 그러나 최근에는 높은 중재비용과 중재절차의 지연, 그리고 과도하게 산업화 되어 가는 경향[1]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그 동안 중재제도의 큰 장점인 신속성의 기반이 되었던 단심제는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럽고 위험한 제도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계약 분쟁의 당사자들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분쟁해결절차가 국제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2] 최근, 기업들의 국제조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 한다)등 국제기구의 노력으로 인해 국제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역시 마련되어지고 있다.

일찍이 UNCITRAL에서는 각 국의 통일된 조정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모델조정법을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기존 모델조정법을 개정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이하 '싱가포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체약국 내에서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까지 가능하게 되었다.[3]

국제상사조정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당사자자치 원칙에 따라 소송이 아닌 대체적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재제도가 신속성과 경제성 등 고유의 특성을 잃어가고 있어

1) 투자자가 중재비용을 분쟁당사자 대신 부담하고, 판정결과로 얻은 수익을 공유하는 '제3자 펀딩'은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돈이 없어서 중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불필요한 국제중재를 조장하고, 중재인과 펀드 간 유착관계 우려된다는 반론이 있다. (한국경제, 'ISD 뒷돈 대는 펀드 2020년 공개', 2018. 11. 11. 자.)

2) S. I. Strong, "Beyo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Promi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2013-21,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issouri, 45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2014), p.11.

3) 2002년 제정된 모델조정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을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을 2018(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로 개정함.

중재보다 제도적으로 유연한 조정제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중재를 연결한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한국도 적절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김대중 외1인, 2019). 또한, UNCITRAL 모델조정법 개정을 계기로 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만큼 조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모델조정법을 중심으로 조정과 중재를 법리적 · 실리적으로 비교할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유병욱, 2018). 미국의 경우 소액사건의 90%이상이 법원과 연계된 ADR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도 수소법원에서 조정을 우선적으로 권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 전이나 중재절차 진행 중에도 조정을 권하고 있어 조정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편임에 비해,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중재법 이외에 조정에 대한 법이 아직 없으며 일반인에게 조정은 물론 ADR 자체의 인지도 역시 매우 낮은 편이라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김중년,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기존 연구들과 같은 선상에서 최근에 개정된 2018년 UNCITRAL 모델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8년 모델조정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제상사조정제도가 국제적으로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아직까지 2018년 모델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된 바 없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제상사조정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모델조정법에 대한 연구는 향후 국내에서 상사조정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가 모델조정법의 한계 및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 국제상사조정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Ⅱ. 국제상사조정제도 현황, 유용성 및 한계

1. 국제상사조정제도 운용현황

현재 국제상사조정은 주로 상사중재기관에서 국제상사중재의 보조 내지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중재기관에서는 별도의 조정규칙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정인명부 역시 갖추고 있다. 대표적인 국제중재기관인 ICC의 경우 ICC ADR 국제센터(ICC International Center for ADR)에서 조정업무를 관할하여, ICC 조정규칙(ICC Mediation Rule)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동 센터 사무국은 경험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정사건을 관리하고, 잠재적 이용자들을 위해 ICC 조정합의가 포함된 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ICC는 당사자들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사건을 등록 한 후에 분쟁 당사자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조정인 명부를 제공하여 조정인을 선정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정심리 및 조정시한을 감독하는 등 조정절차 전반을 관리한다. 조정인 수당 및 경비, ICC 관리비용 등 1사건 당 평균 비용은 미화 19,000달러이며,[4] 이는 사실상 무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행정형조정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ICC 외 다수의 중재기관에서 국제상사조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상사조정을 국제중재와 더불어 중요한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하여 조정기관을 설립하고,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국제상사조정으로 확대하였다.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하 'SIMC')는[5] 국제적인 수준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11월 싱가포르 법무부에

4) ICC, ICC Mediation-Settling complex cross-border dispute (출처 : ICC 인터넷 홈페이지, 2019년 12월 22일 검색).

5) 이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http://www.mediation.com.sg/intro.htm를 참조.

서 설립한 독립, 비영리 기관이다. 2017년 11월 1일 싱가포르정부는 SIMC를 싱가포르조정법에[6] 의한 법상 조정기관으로 승인하였다. SIMC는 정부가 설립한 국제적인 심리시설인 맥스웰 챔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적인 홍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에 힘입어 SIMC는 최근 국제상사조정사건을 상당 수 유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UNCITRAL의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협약의 명칭을 '싱가포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이미 국제상사조정의 중심지로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이하 'HKIAC')[7] 역시 국제중재 외에 국제상사조정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조정과 관련된 규범으로 HKIAC Mediation Rules, Hong Kong Mediation Code, Rules for Handling Complaints against an Accredited Mediator, General Ethical Code, Guidelines for Professional Practice of Family Mediators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국제상사중재에서는 다소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 일본은 국제상사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의 조정전문가들은 2018년 11월 20일 일본 쿄토에 국제조정센터(Japan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 이하 'JIMC')를 설립하여 주변 국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JIMC는 도시샤 대학(Doshisha University)에 위치하여 대학의 시설을 심리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중재인협회(Jap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등록된 변호사, 교수 등을 별도의 교육을 통해 조정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JIMC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렴한 비용, 2~3개월 내의 빠른 처리, 75% 이상의 조정 성공률 등을 달성하여 아시아 대표 국제상사조정기관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18년 11월 20일 개소와 동시에 마련한 조정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대외무역법 상 무역분쟁조정을[8]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상사조정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내용이나 효과 측면에서 조정과 유사한 알선제도에[9] 밀려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하다. 이에 중재원은 무역분쟁조정 외에 자체적인 민간조정제도를 마련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재원은 자체 조정제도 도입 및 시행을 위해 2012년 2월 28일 조정규칙을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법상의 분쟁으로 당사자 간 계약, 기타 법률관계로부터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등 일반적인 민사 및 상사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중재원의 자체 조정은 조정규칙이 순수 국내분쟁에 한정하고 있고, 국제조정인 풀 역시 미비 되어 사실상 국제상사조정은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 국제상사조정제도의 유용성

국제상사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해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게 됨으로써 다른 업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상사분쟁으로 인하여 기업의 대외신용도의 하락이나 이미지 실추 등의 무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상사분쟁은 사적 당사자 간의 분쟁이기는 하지만, 그 분쟁이 국제무역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시스템 마

6) 싱가포르는 조정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7년 조정법(Singapore Mediation Act 2017)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7) HKIAC는 1985년에 홍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재, 조정,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선도기관 중에 하나이며, 2015년 퀸메리 서베이에 따르면 HKIAC는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중재기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8) 대한상사중재원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알선(斡旋)과 조정(調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재원의 직원이 개입하여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련은 매우 중요하다.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제도를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의 분쟁해결역량을 높이는 것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쟁해결제도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조정제도이고, 조정제도의 다음과 같은 특징들로 인해 그 효용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조정은 첫째, 저비용의 신속한 분쟁해결절차이다. 국적을 달리하는 사인간의 무역 및 투자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이나 중재가 활용되고 있으나, 사법관할권 문제, 준거법의 결정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제반 소송비용 또는 중재비용,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고비용의 분쟁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사법제도에 기인한 절차적 문제없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진행되므로 저비용 · 고효율의 분쟁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10]

둘째,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 사업관계의 보호에 적합하다. 소송이나 중재는 법적 권리에 기반 한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승패의 결과를 추구하게 되며, 이로 인해 당사자 사이에 적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국의 법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며, 당사자 사이의 기존의 사업적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단점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조정의 경우 제3자(조정인)의 지원으로 당사자들이 분쟁의 우호적인 해결을 추구하는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업관계의 계속적 유지의 필요가 있는 사적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의 실정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실정을 반영한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법적인 권리, 의무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소송이나 중재 보다 훨씬 다양한 분쟁해결의 옵션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그러한 분쟁해결을 위한 옵션들은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므로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

10) EU 국제조정지침, 전문(6).

3. 국제상사조정제도의 한계

현재의 국제상사조정제도는 기존 국제소송, 국제중재제도에 밀려서 기업 간 국제분쟁해결제도로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한 주원인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된다.

첫째, 각 국가들이 조정과 관련된 입법에 중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EU의 조정지침, 2007년 일본의 ADR 기본법, 싱가포르의 국내 · 외 조정법 등 일부 국가들이 조정관련 입법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다수의 국가들은 조정에 관한 입법을 준비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정'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법으로 민사조정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크게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조정 등으로 분류할 때,[11] 민사조정법은 법원에서의 사법형 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12] 나머지 법률들은 특정분야의 행정형 조정에 관한 법률이다. 즉, 순수한 민간형 조정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구속력 문제이다. 이는 기존 국내조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국내조정의 경우 근거가 되는 법에 따라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정이 있는 반면,

11) 사법정책연구원, '우리나라의 행정형 ADR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9. 11. 28., p.9.

12) 민사조정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법원의 사법형 조정에 관한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순 계약상 효력을 갖는 조정도 있다. 즉, 조정의 효력에 관해 통일적인 규율이 되어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즉, 조정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소송이나 중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조정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조정의 상황도 이럴진대 국제상사조정의 화해합의의 구속력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량 있는 조정인의 부족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경우 일반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더하여 실제 조정심리 중에 당사자를 설득하거나 분쟁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이를 구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구사능력이 있는 중재인 Pool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유능한 국제상사조정인을 양성하려면, 조정이론 및 실무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시스템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정 관련 물적 인프라의 빈곤이다. 최근, 싱가포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조정을 국제중재와 더불어 법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 판단해 국제조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SIMC도 설립이 되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즉, 싱가포르, 홍콩, 영국, 미국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제대로 된 국제조정기관과 역량 있는 사무국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또한, 싱가포르의 맥스웰챔버스와 같이 국제상사조정을 위한 심리시설 역시 아직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13]

13) 우리나라는 중재산업진흥법에 따라 2018년 삼성동 무역회관 18층에 전문 심리시설인 '서울국제조정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적어도 시설 면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선 위치를 점하고 있다.

Ⅲ. 2018 UNCITRAL 모델조정법 주요 내용

1. UNCITRAL 모델조정법 개요

1) 2002 모델조정법 제정

국제무역의 증가와 상업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 보다 중요해졌다. UNCITRAL은 각국이 분쟁해결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당사자 간의 협력 분위기를 유지하며, 추가 분쟁을 방지하고, 국제 무역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마련하였고, 1985년에는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중재와 더불어 효율적인 ADR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고 있던 조정에 관해서도 2002년 모델조정법을 채택하였다. UNCITRAL은 1999년 제32차 회의에서 국제상사중재의 추가적 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였고, 관행적인 상사중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국제상사분쟁해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UNCITRAL 워킹그룹의 주요 활동업무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제35차 회의에서 모델조정법 초안이 공개되었다. 이후 모델조정법 초안은 각 회원국 및 옵저버들에게 회람하여 의견을 구하였고, 2002년 6월 24일 최종 채택이 되었다. 미국(12개주), 캐나다(2개주), 프랑스 등 32개 국가에서 2002 모델조정법을 수용하여 조정 관련법을 제·개정하였다.[14]

모델조정법은 조정이 이미 상사분쟁 해결의 주요 방법으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전제로 개발되었으며, 각 국가들의 조정절차에 대해 국제적인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가들의 법제가 서로 다르기에 증거조사, 비공개성, 조정의 효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조정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그 이용률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14) 출처 : UNCITRAL 홈페이지(2002 모델조정법 status).

Table 1. Lists of Article in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2018) and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

Article	Model Law(2002)	Model Law(2018)
1	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s	Scope of Application and Definitions
2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3	Variation by Agreement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ction and Definitions
4	Commencement of Conciliation Proceedings	Variation by Agreement
5	Number and Appointment of Conciliators	Commencement of Mediation Proceedings
6	Conduct of Conciliation	Number and Appointment of Mediators
7	Communication Between Conciliator and Parties	Conduct of Mediation
8	Disclosure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Between Mediator and Parties
9	Confidentiality	Disclosure of Information
10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	Confidentiality
11	Termination of Conciliation Proceedings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Other Proceedings
12	Conciliator Acting As Arbitrator	Termination of Mediation Proceedings
13	Resort to Arbitral or Judicial Proceedings	Mediator acting as Arbitrator
14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	Resort to Arbitral or Judicial Proceedings
15		Binding and Enforceable Nature of Settlement Agreements
16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ection and Definitions
17		General Principles
18		Requirements for Reliance on Settlement Agreements
19		Grounds for Refusing to Grant Relief
20		Parallel Applications or Claims

Source: UNCITRAL(http://www.uncitral.un.org)

따라서, 모델조정법은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절차규칙에 대해 통일성을 제공하고 조정과정에서 절차의 하자문제를 치유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2018 모델조정법 개정

2002년 모델조정법이 채택이 된 이후 2008년 EU는 민·상사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조정지침(Cross-Border Mediation Directive)을[15] 채

15) 2008년 5월 21일 유럽의회와 EU이사회의 민사 및 상사조정의 특정 측면에 관한 지침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EU 국제조정지침의 목적은 조정의 사용을 장려하고 조정과 사법절차의 균형적 관계를 보장함으로써 대안적 분쟁해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다. EU 국제조정지침은 강행

택하였고, EU 회원국들은 동 지침을 이행하는 국내입법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모델조정법을 수용하여 기존 조정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제정작업을 이행하였다. 이와 같이 모델제정법 채택 이후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조정은 국제상사분쟁에 효과적인 해결방식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조정의 이용을 장려하고, 조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차원의 협력이 모색되고 있었다. 그러나, UNCITRAL의 예상과는 달리 조정제도는 중재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앞서 언급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조정에 관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UNCITRAL은 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2018년 모델법의 개정을 시작하였고, 명칭 역시 '국제상사조정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2018(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 Resulting From Mediation)'으로 변경하였다.[16] 또한, 2018 모델조정법은 적용범위와 해석기준, 조정절차 및 비밀성 등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된 2002년 모델조정법에 새롭게 조문을 추가하여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이전의 모델조정법에 비해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조정'에 대한 용어를 'conciliation'에서 'mediation'으로 변경한 부분이다.[17]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화해합의의 원용요건(Requirements for Reliance on Settlement Agreements), 구제부여 승인거부 근거(Grounds for Refusing to Grant Relief) 등이며, 구체적인 조항별 비교는 〈Table 1〉과 같다.

2. 2018 모델조정법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모델조정법은 국제상사분쟁에만 적용되며, 소비자 관련 분쟁이나 법원 또는 중재에 의한 절차 진행 중 화해합의는 해당 모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18] '국제상사분쟁'은 다시 '국제분쟁'과 '상사분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동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분쟁은 '국제성'과 '상사성'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국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델법에서는 분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19] 실무적 관점에서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업소가 어디에 있는가가 결정의 기준이 된다. 반면, 당사자 국적은 적용여부와 전혀 무관하다. 또한, UNCITRAL 모델조정법 제1조에서 '상사'에 한정함으로써 분쟁의 '상사성'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동 조항의 각주에서는 UNCITRAL 모델중재법에서와 같이 '상사(commercial)'의 범위에 관해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기업들 간의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모두 아우를 것으로 보인다.

2) 절차개시

조정절차의 개시는 분쟁 당사자들이 절차에

규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EU 역내의 국제 민사 및 상사문제(cross-border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 적용된다.

16) 기존 2002 모델조정법의 명칭은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이었다.

17) 2002 모델조정법에서 UNCITRAL은 'conciliation'과 'mediation' 용어가 혼용된다는 이해로 'conciliation'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모델법을 개정하면서 UNCITRAL은 용어의 실제 및 실용적 이용에 맞추기 위한 노력 및 용어의 변경이 모델법의 홍보를 원활하게 하고 그 가시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mediation'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18) 2018 모델조정법 제16조 제3항 : 본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다음의 화해합의: (i) 법원이 승인하였거나 법원의 절차 중에 종결된 화해합의; 및 (ii) 해당 법원의 국가에서 판결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 (b) 기록되었고 중재판정으로서 집행 가능한 화해합의.

19) 2018 모델조정법 제16조 제5항 : 제4장의 목적으로: (a) 일방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들을 가지는 경우, 관련 영업소는 당사자들에게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화해합의로 해결된 분쟁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거나, 화해합의의 종결 당시 당사자들이 그렇게 고려한 장소이다; (b) 일방 당사자가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상거소가 참조되어야 한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합의된 날짜를 개시일로 본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의 조정 요청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조정 요청의 거부로 간주한다. 이 때 일정기간이란 일방 당사자가 요청에 명시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한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요청이 발송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을 받아야 유효한 합의로 간주한다.[20] 즉, 정해진 기간 내에 수락의사를 받지 못하거나 30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경우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게 된다.[21]

3) 조정인 선정

조정인은 1인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 2인 이상의 조정인을 둘 수 도 있다.[22] 조정인을 선임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조정인 추천을 기관이나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기관이나 개인이 요청을 받게 되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가급적 분쟁 당사자들과 다른 국적의 조정인을 지정할 것을 모델법은 권하고 있다.[23]

20) 2018 모델조정법 제5조 제2항 : 다른 당사자에게 조정을 요청한 일방 당사자가 동 요청이 발송된 날의 30일 이내, 또는 동 요청에서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동 요청의 수락을 받지 못한 경우, 동 당사자는 이를 조정 요청의 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

21) 2018 모델조정법 제14조 :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하였고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까지 현존의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약속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은, 자신의 의견으로,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동 약속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까지 동 약속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절차의 개시는 조정의 합의의 포기나 조정절차의 종료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2) 2018 모델조정법 제6조 제1항 : 당사자들이 둘 이상의 조정인 숫자에 합의하지 않는 한, 조정인은 1인이다.

23) 2018 모델조정법 제6조 제4항 : 조정인으로서 행동할 개인들을 추천하거나 지정하는 경우, 기관이나 개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정인의 지정을 확보할 것 같은 고려사항을 참작하여야 하고, 적절한 경우, 당사자들의 국적이 아닌 국적의 조정인의 지정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의 절차적 균형과 조정인의 독립성 및 조정안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정은 중재절차와 같이 공정성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으며, 유연성도 함께 뒷받침되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임된 조정인은 원칙적으로 같은 이유로 다른 분쟁 중재인으로 활동하지 말 것을 의무로 하였다. 이는 조정절차 대상이거나 대상이었던 분쟁에 관하여 또는 동일 계약이나 관련된 모든 계약에서 발생한 다른 분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4) 정보 공개 및 비밀유지

모델조정법은 조정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분쟁 관련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보가 비밀유지 조건으로 일방 당사자로부터 조정인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24] 또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조정절차 중 공개된 모든 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화해합의 이행이나 집행을 목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25]

5) 조정절차 종료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모델조정법은 4가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26] 우선, 당사

24) 2018 모델조정법 제9조 : 조정인이 일방 당사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정보를 받을 때, 조정인은 그 정보의 요지를 조정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방 당사자가 조정인에게, 비밀유지의 특정 조건으로, 정보를 줄 때, 동 정보는 조정의 다른 모든 당사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5) 2018 모델조정법 제10조 :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법에 따라 또는 화해합의의 이행 또는 집행의 목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26) 2018 모델조정법 제12조 : 조정절차는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a) 당사자들의 화해합의의 종결에 따라, 동 합의일에; (b) 당사자들과의 협의 후, 조정에 대한 추가 노력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인의 선언에 따라, 동 선언일에; (c)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당사자들의 조정인에게의

자들의 화해합의(settlement agreement)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이다. 합의가 되면 당사자가 합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더 이상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선언한 경우이다. 이때 조정인이 선언한 날짜를 기준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세 번째는 분쟁당사자들이 조정인에게 절차 종료를 합의하여 요청한 경우이다. 이 때 조정인에게 선언된 날짜를 기준으로 절차가 종료된다. 끝으로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로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나 지정된 조정인에게 선언한 경우 선언일을 기준으로 절차를 종료한다.

6) 다른 절차에 대한 영향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는 다른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모델조정법 제14조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에 합의하였고 특정 기간 동안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까지 현존의 또는 장래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부 또는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그 합의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해당 합의의 내용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다. 즉, 합의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정의 합의의 포기나 조정절차의 종료로 자동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27]

7)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의 효력

조정에 따라 분쟁이 해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는 화해합의가 성사된다. 화해합의는 2018 모델조정법 제15조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인 효력 및 집행절차는 각 국가의 조정 및 민사소송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화해합의의 원용요건

조정에 따른 화해합의를 원용하고자 하는 일방 당사자는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가의 소관 당국에 i) 당사자들이 서명한 화해합의, ii) 화해합의에 대한 조정인의 서명, iii)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정인이 서명한 문서,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증명, 또는 앞의 것들이 없는 경우 소관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등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28] 위 서명에 관해서는 모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29]

9) 구제부여 승인거부 근거

구제부여에 대한 승인거부에 관한 조항은 2018 모델조정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6조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와 매우 유사하다. 즉, 구제 청구의 상대방 당사자가 소관 당국에게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구제부여의 승인을 청구 받은 소관 당국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30] 첫째, 화해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이다. 둘째, 원용되도록 시도된 화해합의가, 당사자들이 유효하게 준수한 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표시가 없으면 소관 당국이 적용 가능하다고 간주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이용할 수 없거나, 이행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혹은 화해합의의 조건에 따라 구속력이 없거나 종국적이지 않은 경우이거나, 또는 추후 수정된 경우이다. 셋째, 화해합의에서의 의무가 이행된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이다. 넷째, 구제부여가 화해합의의 조건에 반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위반이 없었으면 동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지

선언에 따라, 동 선언일에; 또는 (d)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일방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들)과, 조정인이 지정된 경우 조정인의 선언에 따라, 동 선언일에 종료된다.

27) 모델조정법 제14조.

28) 모델조정법 제18조 제1항.

29) 모델조정법 제18조 제2항.

30) 모델조정법 제19조 제1항.

않았을 것으로서 조정인 또는 조정에 적용 가능한 기준을 조정인이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이다. 여섯째, 조정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심을 제기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정인이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공개가 일방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이나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 그러한 비공개로 동 당사자가 화해합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또한, 소관 당국은 구제 부여가 본 국가의 공공정책에 반한다는 점, 또는 분쟁의 주제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조정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한 경우에도 구제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Ⅳ. UNCITRAL 모델조정법 개정에 대한 평가

UNCITRAL에서 모델조정법 개정작업을 진행할 때 분야 최고의 조정전문가들과 정부 대표들이 모여 오랜 시간에 걸쳐 작업하였는바 직접적인 평가와 비판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조정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몇몇 문제점들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조문 별 주요 쟁점

1) 제한적인 적용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UNCITRAL 모델조정법은 '국제상사조정'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국내조정을 제외한 국제조정에만 적용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각 국가들이 본 법을 수용하여 조정 관련 입법을 할 때, 그 적용범위를 '국제상사' 분쟁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국내조정은 배제된 국제상사조정에 관한 법률이 될 것이고, 국내조정을 위해서 별도의 조정법이 필요하게 된다. 국제무역 및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인 만큼, 그 대상을 국제상사분쟁으로 제한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각 국가들은 조정 관련 입법 시 국내조정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존 중재 관련 입법의 예를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조 제1항에서 역시"이 법은 당국과 타국 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에 순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국제상사중재에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UNCITRAL 모델조정법과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두고 있다. 반면, 동 모델법을 전폭 수용한 우리 중재법에서는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중재지'가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국내중재 및 국제중재에 관계없이 모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31] 따라서, 조정법 역시 UNCITRAL 모델조정법을 수용하지만, 그 적용범위는 국내와 국제조정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조정과 국제조정을 관할하는 법을 각각 제정해야 하는데, 조정과 관련된 이러한 입법례는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다.

또한, 그 적용대상을 '상사'분쟁에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UNCITRAL 모델조정법 제1조에서는 '상사'에 한정하고 있다.[32] UNCITRAL 각주에서 '상사'의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와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민사조정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조정 관련 입법 시 그 명칭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민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법상의 '상사'

31) 싱가포르는 중재와 관련해서는 Arbitration Act와 International Arbitration Act로 각각 분리하여 중재법을 두고 있다.

32) 2018 UNCITRAL 모델조정법 제1조 각주에서는 "'상사' 용어는 계약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사적 성격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도록 넓게 해석해야 한다. 상사적 성격의 관계는 적어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교환을 위한 상업거래계약; 유통약정; 상업적 대리 또는 대리인; 팩토링; 리싱; 건설공사; 컨설팅, 엔지니어링; 라이선싱; 투자; 파이낸싱; 은행업무; 보험; 채굴약정 또는 양허; 합작 및 다른 유형의 산업 또는 사업 협력; 및 상공, 해상, 철도 또는 도로에서의 상품 또는 승객의 운송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사'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개념이 아닌 우리 중재법에서와 같이 '사법상의 분쟁'으로[33] 그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추후 실제 조정 관련 법을 입법 시 우리 중재법과 같이 그 범위의 확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조정합의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한 규정

조정신청 시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모델조정법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34] 조정제도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제고하고 위한 UNCITRAL 입법 취지 상 조정합의에 관한 요소를 규정하고, 이를 각 국가들이 수용하게 될 경우 이용자들은 조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재에[35] 비해 절차나 형식에서 자유로운 조정의 특성 상 조정합의서 등 형식적인 요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36] 그러나, 제3조 제2항에서 '국제조정'의 정의에 관한 조항에서 "조정의 합의 당사자들이 동 합의의 체결 당시, 다른 국가들에 그들의 영업소들을 가지는 경우"라고 하고 있기에 조정합의가 국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조정합의의 의의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을 하겠다는 '합의'에 관해서 특별한 요건, 형식, 필요성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이러한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등 혼선을 주고 있다.

3) 조정인 선정기간

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기간에 관한 내용은 중재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방의 해태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모델중재법에서도 중재인 선정기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있다.[37] 그러나 모델조정법에서는 조정인 선정기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물론, 각 국가들이 조정법을 제정하거나, 조정기관들이 조정규칙을 만들 때 조정인 선정기간을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모델법'이란 말 그대로 각 국의 입법 시 일종의 모델이나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즉, 조정인 선정을 위한 적정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규정을 함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라인 내지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 침묵함으로써 모델조정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제적인 통일성 제고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국제조정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33) 우리 중재법 제1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사법(私法)상의 분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4) 모델조정법제18조에서는 '화해합의'에 관해 구체적으로 그 요건과 형식을 정하고 있다. 즉, 화해합의를 원용하는 일방당사자는 국가의 소관 당국에 화해합의가 조정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로서 (i) 화해합의에 대한 조정인의 서명; (ii) 조정이 수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정인이 서명한 문서; (iii) 조정을 관리한 기관의 증명; 또는 (iv) (i), (ii) 또는 (iii)이 없는 경우, 소관 당국이 수락할 수 있는 다른 증거 등 '화해합의'의 요건과 형식에 관해 간접적으로나마 명시하고 있다.

35) 모델중재법 제7조에서는 중재합의의 정의와 방식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중재조항의 형식이나 별도의 합의 형태로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형식을 정하고 있으며,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방식에 관해서 역시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36) 모델조정법 제5조 제2항에서 "다른 당사자에게 조정을 요청한 일방 당사자가 동 요청이 발송된 날의 30일 이내, 또는 동 요청에서 명시된 다른 기간 내에 동 요청의 수락을 받지 못한 경우, 동 당사자는 이를 조정 요청의 거부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정합의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당사자의 조정절차 요청과 상대방의 수락으로 조정이 진행됨을 명시하고 있다.

37) UNCITRAL 모델중재법 제10조 제3항 1호 : 3인 중재에서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으로 부터 중재인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2인의 중재인이 그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6조에 규정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향후 개정 시 검토 사항

1) '조정지(Place of Mediation)' 개념

UNCITRAL 자료에 따르면, 원래 2002년 모델조정법의 초안에서 조정장소는 모델법의 적용을 촉발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였다. 그러나 UNCITRAL 작업반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현행 조정 관행과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판단하였다. 즉, 당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조정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적인 문제로서 조정심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장소에 대한 다소 인위적인 개념을 모델조정법의 적용을 촉발하는 1차적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이유로 모델조정법은 조정장소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규칙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는 조정 관련 입법 시 각 당사국들의 합의에 일임하고, 그러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국제법의 일반규칙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다고 한다.[38]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모델법이란 각 국가의 입법 시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를 각 국가들의 재량에 맡긴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화해합의의 국제적인 집행을 위해 2019년 싱가포르협약이 채택된 상황에서 조정장소의 개념은 동 협약의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2년 모델조정법 당시에는 싱가포르협약 체제를 예측하지 못하여 조정장소에 대한 규정을 누락시켰을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재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모델중재법 제20조와 같이 조정장소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 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정인은 중재인과는 달리 분쟁에서 본인의 판단을 개입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정장소를 조정인이 결정하는 것은 조정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모델조정법 개정 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2) 언어문제

일반적으로 국제상사분쟁의 당사자들은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분쟁해결절차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에 관한 결정은 당사자들의 비용부담 문제 등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따라 모델중재법에서는 언어문제에 관해 별도의 조문을 규정하여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39] 그러나, 모델조정법에서는 언어에 관해 침묵하고 있다. 이 역시 당사자들의 자율을 중시하는 조정제도의 특성 상 언어를 특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면, 어떤 언어로 절차를 사용할지의 문제는 조정인 선정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모델조정법 제4조 제3항에서는 화해합의의 집행 시 체약국 소관당국은 자신들의 공식언어로 번역되어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조정에서의 언어문제 역시 민감한 이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언어문제 역시 향후 모델조정법 개정 시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3) 취소절차의 부재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합의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계약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해합의 후에 일방당사자는 그러한 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시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델조정법에서는 취소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는 아예 화해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당사자는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관해 불분명하다. 다만, 모델조정법 제15조에서 화해합의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 구제 부여의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통해 볼 때, 화해합의에 대한 취소는

38)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with Guide to Enactment and Use 2002, 2004., p.20.

39) 모델중재법 제22조에서 언어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 작성 시 이는 당사자들의 일종의 의사표시에 해당이 되고, 우리 민법 제109조 내지 제110조에서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화해합의 작성 시 의사표시의 착오 등 아주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델중재법 제34조에서 역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모델조정법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모델조정법은 각 국가들이 수용하여 자체 조정법을 제정하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에, 조정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야 한다. 하지만, 유사한 법제인 모델중재법과 비교하여 보면 조문 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곳곳에서 흠결 내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된다. 물론, 중재와 조정의 절차 및 효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재와 직접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추후 각 국가들이 모델조정법을 수용하여 조정 관련 입법을 하고, 이에 따른 조정절차가 진행될 때 당사자들에게 일부 혼선 내지 절차상 하자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모델조정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정은 분쟁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하여 스스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분쟁해결제도로서 재판이나 중재와 같이 제3자가 개입하는 분쟁해결제도와 달리 당사자들에 의한 분쟁해결의 사적자치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재판이나 중재와 달리 사법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국제상사조정이 분쟁해결제도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은 그 제도적 근거로서 조정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다. UNCITRAL 모델법을 기초로 하여 그 내용과 절차를 국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가칭 '상사조정법'의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법의 제정 방향은 당사자 중심, 최소한의 절차규정의 필요, 민간형 조정센터를 통한 조정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국제중재를 부가가치가 높은 법률서비스산업으로 인식하고 싱가포르, 홍콩 등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7년 중재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하여 이러한 경쟁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국제중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국제상사조정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분쟁해결의 허브로서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UNCITRAL에서는 국제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싱가포르 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 역시 늦지 않게 준비하여 동북아시아 법률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여야 하며, 무역과 해외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상사분쟁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braham P. Ordover and Andrea Doneff, "Alternatives to Litigation: Mediation, Arbitration, and the Art of Dispute Resolution", National Institute for Trial Advocacy, July 2002.

Directive 2008/5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1 May 2008 on certain aspects of mediation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Kim, Dae-Jung and Se-Jin Kim (2019), “New Trend of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Emergence of Hybrid(Med-Arb) and its Impl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13, 65-88.

Kim, Jung-Nyun (2015), “A Study on the Commercial Mediation System in China and its Implications”, *The International Commerical & Law Review*, 66, 171-190.

Kim, Sung-Ryong(2018), “A Study on the Solution for Activation and Establishment Significance of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Journal of Korea Trade, 43(1), 91-107.

Laurence Boulle (2001), Mediation: Skills and Techniques, Butterworths (Australia).

Linklater (2013), “Commercial Mediation – A Comparative Review”.

Raymond H M Leung (ed.), Asia Mediation Handbook, Sweet & Maxwell (Hong Kong: 2015).

Schnabel, T. (2018), “The 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A Framework for the Cross-Borde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Mediated Settlements”, SSRN.

S. I. Strong, (2014) “Beyo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Promi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esearch Paper No. 2013-21, School of Law University of Missouri, 45 Washington University Journal of Law & Policy.

UNCITRAL, Report of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on the work of its sixty-fifth session (A/CN.9/896).

UNCITRAL, Report of Working Group II (Dispute Settlement) on the work of its sixty-eighth session (A/CN.9/934).

UNCITRAL,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2018 : amending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2002

UNCITRAL (2002),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 with Guide to Enactment and Use 2002, 2004.”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Wang Guiguo · Yang Fan, (2013) “Mediation in Asia-Pacific: A Practical Guide to Mediation and Its Impact on Legal Systems”, Wolters Kluwer (Hong Kong).

Yu, Byoung-Yook (2007), “A Study on the Requirements for the Valid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and Its Contents”, Journal of Korea Trade, 32(4), 93-119.

_____ (2018), “A Study on the Promoting the Us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 Focus on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among ADR”, *The International Commerical & Law Review*, 80, 265-290.